

충청북도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의 조제목 “(건축물의 높이제한)”을 “(건축물의 높이제한등)”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“건축법 제51조”를 “건축법 제51조, 동법 제53조, 동법 제59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